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8

특정 지역에서의 병해충 상태 결정

Determination of Pest Status in an Area

(2021)

FAO/IPPC 사무국

요구되는 인용:

FAO. 2021. *Determination of pest status in an area*.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8. Rome.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 표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이들이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2021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 산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ical-ShareAlike 3.0 IGO licence (CC-BY-NC-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legalcode>).

이 라이센스의 조건 하에, 이 산물이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이 산물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사, 재배포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산물의 사용에 있어서 FAO가 특정 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어떤 제안도 있어서는 않된다. FAO의 로고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산물이 적용된다면, 동일 또는 동등한 Creative Commons licence 하에서 허가(licensed)를

받아야만 한다. 이 산물의 번역이 수행된다면, 필요한 인용과 더불어 다음의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번역은 UN FAO가 수행한 것이 아니다. FAO는 번역의 내용이나 정확함에 책임이 없다. 원 영어본이 원본 ‘authoritative edition’이 되어야 한다.”

이 라이센스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발생은,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센스 8항에서 설명된 중재와 조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amc/endml> 조정 규칙이고, 조정은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제삼자 자료. 표, 그림 또는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제3자에 제공되도록 (attributed)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산물의 제삼자가 소유한 요인의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청구(claim)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 있다.

판매, 권리와 licensing. FAO 정보 산물은 FAO 웹사이트(www.fao.org/pub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고, publication-sales@fao.org를 통하여 구매 가능하다. 상업적 사용 요청은 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이 권리와 licensing 관련 질문은 copyright@fa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을 위하여 인용되는 IPS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출판 이력

이 부분은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이 아님

1994-05 CEPM-1이 병해충 분류(categorization)과 병해충위험 용어
(1994-004)를 주제로 추가

1994 전문가 작업단이 초안을 작성

1995-05 CEPM-2가 초안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1996-05 CEPM-3가 새로운 문구 초안을 추가할 것을 결정

1997-10 CEPM-4가 초안을 수정하고 의견수렴을 승인

1998 의견수렴 실시

1998-05 CEPM-5이 채택을 위하여 초안을 수정함

1998-11 ICPM-1이 기준을 채택

ISPM 8. 1998. *Determination of pest status in an area.* Rome, IPPC, FAO.

2010-03 CPM-5가 ISPM 8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 결정)의 개정을
주제로 추가 (2009-005).

2013-11 SC가 작업지시서 59를 승인

2017-09 전문가 작업단이 개정 ISPM 초안 작성

2018-05 SC가 초안을 수정하고 1차 의견수렴을 승인

2018-07 1차 회원국 의견수렴

2019-02 간사가 초안을 수정

2019-05 SC-7이 수정하고 2차 의견수렴을 승인

2019-07 2차 의견수렴

2019-11 SC가 초안을 수정하고 CPM 채택을 승인함

2021-03 CPM-15가 기준을 채택함

ISPM 8. 2021. *Determination of pest status in an area.* Rome, IPPC,
FAO

출판 이력은 2021.4월 최종 업데이트됨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을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본 출판에서 사용한 명칭과 자료들의 표현은 어떠한 국가, 영토, 도시 혹은 지역이나 이들의 정부당국, 또는 이들 국경 및 경계에 대한 한계와 관련하여 UN FAO 측의 어떠한 의견의 표현도 암시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제조업체의 상품에 대한 혹은 이들이 특허권이 주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이들을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유형을 가진 다른 것들보다 선호되어 FAO에서 이들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합의에서 표현된 의견은 저자의 의견이며 반드시 FAO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1 (한국어 번역)"
"© FAO, 1995–2021 (영문판)"

목 차

채택

서론

범위

참고문헌

용어정의

요건의 개요

배경

생물다양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

요건

1. 병해충 상태 결정의 목적
2. NPPO 책임
3. 병해충 상태 결정에 사용되는 정보
4.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 설명
 - 4.1 존재(presence)
 - 4.2 부재(absence)
5. NPPOs 간 병해충 상태 정보교환

채 택

이 기준은 2018년 11월 ICPM-1에서 채택되었다. 첫번째 개정이 2021년 3월 CPM-15에 의해 채택되었다.

서 론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떤 지역의 병해충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병해충 기록 및 기타 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병해충 상황의 분류(categories)가 정의되어 있고 병해충 보고를 위한 병해충 상태의 사용 설명이 제공되어 있다.

또한 이 기준은, 병해충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가능한 근거(sources)에 대한 지침도 제공한다.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는 IPP
<https://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에서 찾을 수 있다.

IPPC 사무국. 1997.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Rome, IPPC Secretariat, FAO.

용어정의

본 기준에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는 ISPM 5(식물위생 용어집)에 기술되어 있다.

요건의 개요

국가식물보호기구(NPPOs)는, 병해충위험분석, 식물위생 규정의 설정 및 이행, 규제병해충 목록 작성, 병해충무발생지역·병해충저발생지역·병해충무 발생 생산장소·병해충무발생 포장의 설정과 유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병해충 상태를 사용한다.

병해충 상태는 해당 지역에 책임이 있는 NPPO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존재” 또는 “부재”로 구분된다.

보고된 정보의 질과 신뢰성,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를 결정할 때에 NPPO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배경

병해충 보고와 다른 정보들은 NPPO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병해충의 존재, 부재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NPPOs는 병해충 위험분석, 식물위생 규정의 설정 및 이행, 규제병해충 목록 작성, 병해충 무발생지역, 병해충저발생지역,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병해충 무발생 포장의 설정과 유지와 다른 활동을 위하여 병해충 상태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이 기준의 목적은, 특히 ISPM 6(예찰)에서 설명된 예찰과 병해충 기록의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병해충 상태는 ISPM 17(병해충 보고)에서 설명된 병해충 보고의 내용(content)의 일부분이다.

생물다양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

이 기준은, 환경에 영향할 수도 있는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의 병해충 상태 회원국들이 병해충 상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생물다양성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일관적인 방법으로 병해충 상태를 결정하고 설명하는 것은 국가들이 병해충과 관련된 위험을 구명하고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요건

1. 병해충 상태 결정의 목적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 결정은, IPPC 협약을 이행하고 ISPM 1(식물보호를 위한 식물위생 원칙과 국제적인 무역에서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서 기술된 원칙과 다른 ISPM들에서 상세히 설명된 다양한 활동들의 중요한 요인이다.

NPPOs가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할 때 병해충 상태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

- 병해충위험분석;
- 시장접근 요청을 고려;
-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 병해충 예찰과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
- 식물위생 규제를 설정하고 이행;
-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병해충의 목록은 작성하고 유지;
- 규제병해충 목록을 작성하고 업데이트;
- 병해충무발생지역, 병해충저발생지역,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고 유지;
- IPPC와 관련된 정보 교환

2. NPPO의 책임

체약국들은 IPPC (VIII.1(a) 항) 하에서 “병해충의 분포(occurrence), 발발 (outbreak) 또는 확산(spread)”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병해충 상태는 우려 지역을 책임지는 NPPO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NPPO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적시의(timely) 가용한 정보에 근거하여 병해충 상태를 결정
- 병해충 상태 결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병해충 기록과 관련 증거를 유지
- 적정할 경우 병해충 상태를 재평가

3. 병해충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정보

병해충 기록과 다른 근거(sources)로부터의 정보가, section 4에서 설명된

카테고리 중 적정한 병해충 상태를 결정하는 기초로 사용되어야 한다.

병해충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ISPM 6에서 설명되어 있다.

다양한 근거에서 나온 정보들이 있으며 신뢰성 수준이 다르다. 병해충 분포, 분류학(taxonomy) 및 검출방법의 변화 때문에, 오래된 정보들은 최근의 정보보다는 현 병해충 상태에 대해 신뢰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신뢰도가 높으며 최신인 근거가 병해충 상태 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낮은 신뢰도의 근거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정보의 gap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예찰(ISPM 6 참조)과 병해충 진단(ISPM 27, 규제병해충에 대한 진단 프로토콜)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때로는 가용한 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병해충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불확실성의 근거는 다음을 포함할 수도 있다:

- 제한된 병해충 생물학적 정보;
- 분류학적 개정 또는 모호성;
- 모순된(contradictory) 또는 오래된(outdated) 정보;
- 예찰 방법과 관련된 어려움 또는 신뢰하기 어려움;
- 진단 방법과 관련된 어려움 또는 신뢰하기 어려움;
- 병해충-기주 관련 불충분한 정보;
- 알려지지 않은 병인학(病因學, etiology);
- 병해충을 찾지 못한 표징의 검출 또는 병징의 관찰;
-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분포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 정보 근거를 신뢰하기 어려움

NPPO가 병해충 상태를 결정하지 못할 때, NPPO는 이러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4.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의 설명

NPPO는, 예찰 결과(ISPM 6 참조)를 포함한 다양한 근거로부터의 정보에 기반하여,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에 근거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

진단과 연구 목적(예, 실험실 내의)으로 검역 중인 병해충 또는 수입 화물에서 검출되어 유치 중인 병해충은 특정 지역에서의 병해충 상태에 영향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집단(population)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병해충이 특정 지역에서 검출된 경우도 그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에 영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의 결정은, 현재 그 지역에서 병해충 분포에 대한 증거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다양한 근거로 부터의 가용한 정보를 합성과 가용한 경우, 역사적인 병해충 기록에 대한 고려에 근거해야 한다.

병해충 상태는 NPPO에 의해 구명되고 특정된 지역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병해충 상태가 결정된 경우, 해당 지역과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무발생 포장(ISPM 4(병해충무발생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과 ISPM 10(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무발생 포장의 설정을 위한 요건)에 대한 정보가 보고서에 추가될 수도 있다. 병해충 상태는 아래에 있는 카테고리에 따라 설명되어야 한다.

4.1 존재(Presence)

특정 병해충이 존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병해충 상태는 표1에서 제공된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더 구분되어야 한다.

표1. 병해충 상태-존재

병해충 상태	병해충 상태 설명
존재: 널리 분포	해당 병해충이, 조건이 적당한 지역 전체에 존재함
존재: 널리 분포하지 않으며 공적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정 지역의 한 부분(area) 또는 여러 부분에 해당 병해충이 존재하고, ISPM 5(식물위생 용어집)의 보충서 1("공적방제"와 "널리 분포하지 않는"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에 따른 "공적방제"를 하고 있지는 않음
존재: 널리 분포하지 않고 공적방제 중임	해당 병해충이 특정 지역의 한 부분 또는 여러 부분에 분포하고, ISPM 5(식물위생 용어집)의 보충서 1("공적방제"와 "널리 분포하지 않는"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에 따른 "공적

	방제” 대상임. 공적방제의 목적은 병해충 상태 결정과 함께 언급되어야 함
존재: 낮은 발생 정도	해당 병해충이 특정 지역에 존재하지만, ISPM 22(병해충저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에 따라 발생 정도는 낮음
존재: 특정 병해충무발생 지역을 제외	해당 병해충이, ISPM 4(병해충무발생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에 따라 병해충무발생인 일부분을 제외하고, 그 지역에 포함. 해당 부분들은 병해충 상태 결정과 더불어 기술되어야 함
존재: 임시적	병해충이 존재하고 있으나, 조건(예, 기주, 기후)이 정착에 적당하지 않거나 적절한 식물위생조치가 적용되고 있어서, 해당 병해충이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있음

어떤 경우에는, 병해충 존재에 대한 추가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 지역적인 빨발의 확대
- 공적방제 조치의 적용
-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보고됨
 - . 특정 기주
 - . 닫힌 구조물(예. 온실 내)
 - . 식물원 내
 - . 환경에는 있으나 식물 기주에는 있지 않음(예, 토양 또는 물)
 - . 도시 지역
 - . 일년 중 특정 시간

4.2 부재(absence)

해당 병해충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병해충 상태는 표2에서 제공된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더 구분되어야 한다.

표 2. 병해충 상태-부재

병해충 상태	병해충 상태 설명
부재: 기록되지 않음	예찰에 의해 해당 병해충이 없고 기록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음 (ISPM 6(예찰) 참조)
부재: 국가 전체에 해당 병해충이 없음	국가 전체가 ISPM 4(병해충무발생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에 따라 병해충무발생 지역으로 설정되고 유지됨

부재: 병해충 기록이 무효함(invalid)	<p>병해충 기록이 해당 병해충의 존재를 기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로 이 기록은 무효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학(taxonomy)의 변화가 있었음 - 오동정(misidentification)이 일어남 - 기록(들)이 확인되지 않음 - 기록(들)에 오류가 있음 - 국경에 변화가 일어남
부재: 병해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p>병해충 기록이 해당 병해충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으나 예찰 결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ISPM 6 (예찰) 참조). 이유(들)는 다음을 포함 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이 지속되기에는 기후 또는 다른 자연적 제한이 있음 - 재배되는 기주 종 또는 품종에 변화 - 생산 방법의 변화
부재: 병해충이 박멸됨	<p>병해충 기록이 해당 병해충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음. 문서화된 병해충 박멸 조치가 이행되었고 성공적임 (ISPM 9(병해충 박멸 프로그램 지침) 참조). 예찰이 지속적인 부재를 확인함(ISPM 6(예찰) 참조)</p>

부적절한 또는 불충분한 예찰 활동으로 인한 정보의 부족은 병해충 부재를 결정하는 근거를 구성하지 않는다.

5. NPPOs간 병해충상태 정보 교환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와 관련된 정보는 병해충 보고에 기여한다 (ISPM 17 참조). 다른 NPPO의 요청에 대하여 병해충 상태에 대한 병해충 기록과 다른 근거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NPPO의 의무이다.

어떤 NPPO에 의해 선언된 병해충 상태가 다른 NPPO에 의해 의문시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예, 수입국에서 반복되는 검출이 있거나 모순되는 병해충 보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이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NPPOs간 양자간 접촉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에 책임이 있는 NPPO에 의해 병해충 상태가 수정되어야 한다.

NPPOs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 조화와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병해충 상태 정보를 교환할 때 이

- 기준에서 작성된 병해충 상태의 카테고리를 사용
적정할 경우 ISPM 17에 따라 병해충 상태 변화에 대해 적기에 다른
NPPOs와 다른 지역 식물보호기구에 알려줌